

산업통상자원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

- 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- 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3차 접종률 제고를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,
 -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점,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 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,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,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, 종전 **방역강화** 조치의 연장(2주)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,
 - 영화상영 및 공연시간으로 인해 이용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영화관·공연장이나, 상시 많은 인파가 몰려 시설 내 밀집도가 높은 백화점·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적용 등 일부 시설 등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주요 조치 사항>

구분	주요 내용	비고
영화관 공연장	▲ 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 → 단,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,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	
백화점 대형마트*	▲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적용 → 2022.1.10.(월)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(2022.1.10.~2022.1.16.) * 대규모 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(예: 하나로마트)에 한해 적용	
방역패스	▲ 방역패스 적용대상(연령) 확대 시기 변경 → 12세 이상인 자(종전: 2022.2.1. / 변경: 2022.3.1.(계도기간:2022.3.1.~2022.3.31.) ※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, 유호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	

가. 적용 기간: 2022, 1, 3,(월) ~ 2022, 1, 16,(일) 24시

문서관리카드 산업일자리혁신과-8 5-1

나. 적용 지역 : **전국 17개 시·도***

* 서울특벽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척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경과규정

-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: 2022.1.17.(월) 05**시까지 적용**
- ② 백화점·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*: 2022.1.10.(월) ~ 별도 안내 시까지
 - * 계도기간: 2022.1.10.(월) ~ 2022.1.16.(일)
- ③ 방역패스 적용 대상(연령) 확대*: 2022.3.1.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 - * 계도기간: 2022.3.1.(화) ~ 2022.3.31.(목)
 - * 적용기간,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
○ 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7종)

-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민)
-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<u>상점·마트·백화점</u> * 대규모 점포 및 3,000㎡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대상
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13종) 및 종교시설
-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·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종교시설
- 고위험장 사업장(2종) : 콜센터, 물류센터
-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호
- 조치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1: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2: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

② 모임·행사

-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- ■(사적모임)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* 식당·카페 이용 시 '접종완료자 등'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)
- ■(**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**) *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
- (1~4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·행사 가능
- (50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
- (300명이상)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·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
 - → 단, 2021.12.16. 0시 이전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,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(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, 축소하여 개최 권고)
- ※ 접종완료자 등: 접종완료자, 완치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, 18세 이하인 자 (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(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)
- ※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- ※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(시합 등) 가능

<모임·행사 예시>

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 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- ※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
- (시험) 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 - 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3: 전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③ 교통시설

- 대상 시설 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- 법적 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호
-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 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

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계속 적용

④ 국공립시설

○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희 관리하여 운성-3

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⑤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⑥ 사업장

○ 유연근무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 적극 활용,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.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

⑦ 학교(등교)

-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·과밀학교 밀집도 2/3*으로 조정하되,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·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
 - * 초등학교(1,2학년 포함) 밀집도 5/6, 중·고등학교 밀집도 2/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.20(월)부터 적용(학교별 탄력 적용), 유·특수·돌봄 및 소규모·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
- 3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**홈페이지에 공지하고**, **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**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4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2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.
 - 3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<mark>앙회, 전국경제인연</mark>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 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 **유재훈** 과장 건결 2022. 1. 3. **김재준**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8 (2022. 1. 3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산업일자리혁신과 / http://www.moti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jaehun9110@oma.go.kr 산업일작리형셨과-8 5-5